종단협, 회원 종단 자격·의무 강화된다

종단협, 14일 총회·이사회서 정관 개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들의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56차 정기총회 및 제2회 이사회'를 열고 협회 정관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회원 52명, 위임 12명으로 성원된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임원 등에 대한 정관 개정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협의회의 정관 개정은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관의 전반적 검토를 결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의회는 사무총장 지민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정관 전반에 걸쳐 개정 사항을 점검해왔다.

이날 논의된 정관은 △제2장 회원 △제3장 △제5장 이사회 △정관시행세칙 등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회원 종단 자격과 의무가 강화됐다.

회원 부문 정관에서는 회원 종단 대표자가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현행법에 의해 실형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해임하고, 해당 종단은 견책 또는 3~6개월 간 회원 자격을 중지토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정관시행세칙의 설립일이 3년 이상인 종단과 법인단체가 가입할 수 있었던 회원 자격 조항을 '창종(설립일)만 10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협의회의 임원 구성도 변경됐다. 상임이사는 20인에서 25인으로, 이사는 40인에서 45인으로 상향됐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조항은 분리돼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이 아닌 '추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협의회의 사무총장은 기존 이사회에서 추천받던 것을 이사회에서 선출해 회장이 임면하도록 개정했으며, 감사는 회원종단에서 순차별로 추천받아 이사회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회원 종단 대표자 실형 확정 시 당사자해임, 3~6개월 회원정지
'창종 만10년 이상' 자격 명시돼
前 원장 배임 실형 법화종 강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회의 직후 코로나19 의료진을 격려하는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이어진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경 △불기 2564(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한국불교지도자 성지순례 진행 △법화종 사태 논의 △종단협 의전순서 조정 등의 안건이 상정·논의됐다.

이사회는 앞서 개정된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 종단인 법화종을 이사로 강등하기로 결의했다. 법화종은 前 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주지 재임명 과정에서 배임한 것이 문제가 돼 올해 1월 최종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종단협 의전 서열도 새로 정리됐다. 개정된 정관에 따라 이사 종단으로 강등된 법화종과 수년간 협의회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임이사 종단 일승종을 지난해 신규 가입한 불이종의 바로 위인 28, 29위로 의전 서열을 조정했다.

신규 상임이사 종단으로는 (재)일붕선교종과 총화종이 참여하게 됐으며, 의전 서열도 이에 맞게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국내 사업 연기와 취소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6억 6000만원, 특별회계 1억 68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종단협 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공황상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일불교協 운영 체계 확립

이와 함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정관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 확립에 나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원행)는 7월 14일 AW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 및 제40차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정관 개정은 관례로 이뤄지고 있는 협의회 운영을 정관에 명시함으로써 운영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

정관 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 자격은 기존 한국불교 기성종단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정사, 재가자'로 변경됐다. 부회장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임원 구성에 준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임원들의 임기도 명확하게 명시됐다. 개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2년 단임으로, 부이사장 및 사무총장 임기는 4년으로 명문화됐다.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총림 당연직 임회위원 '원로의원' 변경 검토

15일 총림제도개선특위서 논의

조계종 총림의 임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자격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종회 총림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이하 총림특위)는 7월1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총림법 개선을 위한 조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4조 임회의 구성 가운데 당연직 임회 위원에 대한 조항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총림법은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회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 수가 증가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위원스님도 "현 추세를 볼 때 법계 대종사 스님이 가까운 시일 내 10명 이상으로 증가할 교구도 있다"며 "상황을 감안해 일부 제한을 두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원 스님들은 이에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전·현직 원로의원인 재적승'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총림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송지희 기자

사찰 세금 과다… 부담금 감면 필요

전통사찰들의 입지는 대부분 산이나 임야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찰 발전을 위한 불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개발 부담금 등이 발생해 왔다. 조계종이 전통사찰 각종 규제에 여러 부담금에 대한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뤄진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법조항은 '농지법 시행령'이다. 전통사찰이 건물 신축 등 불사를 진행할 경우 불가피하게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상당하다. 조계종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하거나 감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사찰의 보존과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정된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21대 국회 이것만은 제개정을
1. 차별금지법
2. 사찰 건축 관련 법령
3. 문화재 도난 관련 법령
4. 사찰 제세 관련 법령

산지에 자리한 전통사찰들
불사 위해선 부담금 발생해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종교집회장에 대한 개발행위부담금 부과 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지와 임야에 자리한 사찰이 이미 여러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에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계종에서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해 형평성을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대에 맞게 전면 개정하자는 조계종의 요구는 오래된 화두이기도 하다. 기실 2009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사법)'로 법률명이 변경된 이후 10년이 지났으나 전통사찰의 실질적 보존 및 지원 조항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전통문화유산인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를 위해 '전사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전통사찰보존지의 명확한 범위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 △전통사찰 무허가·승인 건물 양성화 △재난 발생시 복구 지원 △전통사찰보존지 내 발견된 매장문화재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 등의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전통사찰 전기요금 개선 필요"

본사주지協 14일 선운사서 회의
총무원, 사찰 전기료 현황 조사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7월 14일 67차 회의를 개최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사찰 전기요금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정묵) 7월 14일 선운사 불교회관에서 제67차 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다.

이날 총무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보고 △사찰 분담금 10% 감면에 따른 중앙종무기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교구본사 및 주요 전통사찰 전기요금 사용현황조사의 건, 사찰예산회계법 일부 개정안 보고 △사찰등급조정 계획 보고의 건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특히 총무원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해 전통사찰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려 한다. 이를 토대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개정 요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본사 및 전통사찰 전기요금 납부 현황 조사'에 협조를 요청했다.

회장 정묵 스님(수덕사 주지)은 "수덕사에서 난방용 경유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교체했는데 연간 약 4억 원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그동안 문화재 방재용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문화용 전기요금을 신설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 추천과 관련해 명사 자격과 추천 절차와 관련한 개정안이 중앙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차별금지법 법제화 더 이상 미뤄선 안돼"

종평위, 발의 환영 입장문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가 차별금지법 국회 발의를 환영하며 "법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종평위는 7월 1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 사회의 관용문화와 인류공동체의 화합에 큰 이정표가 세워지길 희망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종평위는 입장문에서 "한국사회의 갈등해소와 혐오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본 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국회 발의를 환영한다"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특정집단의 '억지 논리와 주장' 때문에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0년 9월 10일(목) ~ 9월 12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점심제공〉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010-8779-6926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주 관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생활 속에서의 주인공 관법 수행
▶승려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전문성 향상
▶포교현장에서 실질적 활용 방안

1일차 (9월 10일 목)	2일차 (9월 11일 금)	3일차 (9월 12일 토)
마음치유와 수행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의식에 관한 통찰과 마음공부, 그리고 사찰발전을 위한 실제적 적용방안
현대인의 마음공부	현대인을 위한 포교	
	내 마음의 용광로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한마음 공생실천과정
나로부터의 시작

제33기 모집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한마음으로 굴려
놓아 원만하게 풀어나가며,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여
자성을 밝혀 나가는 생활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대 상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일 정 2020년 10월 10일(토) ~ 12월 12일(토) 총10주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 6시
장 소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3층)
모집인원 총50명(선착순 모집)
수 강 료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신청방법 인터넷 접수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네이버에서 '함께하는 진화'를 검색)
문 의 031-470-3200, 3201